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24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김남근 · 권향엽 · 김승원
김원이 · 김 윤 · 맹성규
문금주 · 민병덕 · 박선원
박용갑 · 박해철 · 박홍배
송재봉 · 안도걸 · 양부남
오세희 · 이병진 · 이용우
이원택 · 이훈기 · 정일영
정진욱 · 채현일 · 최민희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MBK-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인수(Leveraged Buyout, LBO)로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인수채무를 변제하여 자산(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하여 투자대상기업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노동자, 임점상인, 납품중소기업들도 함께 고용위기나 파산위기에 빠지게 하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LBO 차입인수” 자체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회생시키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고 제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기간에 투자대상기업의 자산매각이

나 과도한 배당을 통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고 ‘exit’하는 사모펀드의 “LBO 차입인수”의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금융감독이 필요함.

기업인수용 사모펀드의 투자자(LP, 사원)는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회사 등 사회적 책임투자(스튜어드십)를 지향하는 기관투자자들로서, MBK와 같은 운용사(LP, 업무집행사원)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경영위기에 빠지게 하는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과잉배당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의해 행위의 중단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내부 통제를 할 수 있음. 실제로, MBK-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민연금은 운용사들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하는지 여부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음. 그래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운용사(GP, 업무집행사원)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 기관투자자(LP, 사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4제8항).

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투자대상기업이 재무상태 악화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의 중단이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대상기업이 이러한 무리한 LBO 차입거래로 파산상황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5제11항).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모펀드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21제1항제7호,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14제8항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을 “구체적인 내용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재무제표 등
2.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차입계약
3. 제2호의 차입계약 대상이 된 투자대상기업의 자산 매각 또는 배당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제2호의 투자대상기업이 서로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의 이해상충 여부

제249조의15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에 관한 사항, 제1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⑪ 업무집행사원은 제249조의14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발생 또는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9조의14제12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1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14제1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5제1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 1 제260호의12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각각 제260호의13부터 제260호의17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260호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60의12. 제249조의14제12항의 금융위원회가 한 조치 명령에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 제15호의6부터 제15호의8까지를 각각 제15호의7부터 제15호의9까지로 하며, 같은 별표에 제15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249조의14제8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제공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제공 및 설명사실에 관한 내용의 기록·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5의6. 제249조의15제1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⑦ (생략)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 <u>구체적인 내용을</u> ----- ----- ----- ----- -----.
	1.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재무제표 등</u>
	2. <u>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u>

<u><신 설></u> <u><신 설></u> ⑨ ~ ⑬ (생 략)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 ⑩ (생 략) <u><신 설></u>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	<u>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u> <u>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차입계약</u> 3. 제2호의 차입계약 대상이 된 투자대상기업의 자산 매각 또는 배당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제2호의 투자대상기업이 서로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의 이해상충 여부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업무집행사원은 제249조의14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발생 또는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9조의14제12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⑫ ----- ----- -----
--	---

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
검토의 방법·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보고에 관한 사항, 제11항
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 school handwriting practice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1. ~ 3. (현행과 같음)

4. -----
----- 투자대상기업
업

